

1999년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

의안번호	제302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4

제 출 자 : 시 민 옴 부 즘 만

I. 머 리 말

19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된 옴부즈만제도는 그 동안 수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채택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자칫 현대행정에서 범하기 쉬운 행정오류나 공익을 우선으로 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지방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오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식수준과 행정수요도 훨씬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행태도 양적, 질적인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97. 5. 1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로 제4차연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도입 시행하게 된 제도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모르는 시민에게 종합민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의 제3차연도인 99년 지난 한해 동안은 총 6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63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4건은 행정기관과 주민간 첨예한 대립으로 현장검증, 사실확인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종결한 63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49.2%인 31건의 고충민원은 고충인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해당 행정기관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의견표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처리되어 고충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수용불가 4건(6%)과 불가통보 16건(25%)과 상담안내 12건(19%)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줌으로 대시민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편 아직도 경직되고 권위적인 행태가 일부 공무원이 남아있음을 적시할 수 있어 스스로의 착오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고충처리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

를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인터넷 전문가, 여성운동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촉된 읍부즈만자문위원회를 확대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자문을 구하여 시민의 고충을 심도있게 심의·검토해 처리함으로써 고충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립하였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읍부즈만 홈페이지 개설로 인터넷을 활용한 고충민원 신청 접수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 발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능적, 제도적인 발전방안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구제, 시민에 의한 행정의 효율적 통제, 시와 시민의 갈등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시와 시의회와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와 시의회, 읍부즈만이 하나된 노력으로 일관할 때 본 제도는 80만 시민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시민읍부즈만은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과 불편을 발로 찾아가서 내 아픔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읍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거나 집단민원 발생시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와 시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차연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행하기까지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읍부즈만 자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천시시민읍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께 공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2월 일

시 민 읍 부 즈 만 신 철 영
이 강 용

II. 부천시시민읍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

1. 읍부즈만제도 소개

- 읍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후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행정국가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급속도로 확산 전파되어 현재는 약 85개 국가에서 채택 시행되고 있으며
-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및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인 중립 위치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인하여 국민이 입은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구제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점차 지방자치

단체에 읍부즈만을 파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해결해 주도록 하였으며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읍부즈만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 신문고와 어사제도 등이 이와 유사한 제도라할 수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읍부즈만제도는 94. 1. 7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공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94.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시는 97. 12월 읍부즈만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의회 의결을 거쳐 97. 4월 읍부즈만을 선발하였고 97. 5.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읍부즈만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음
- 읍부즈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용,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는 “시민권리 구제기능”을 수행하고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케 하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외에도 고질·반복민원 등에 대한 “민원 종결 기능”,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시정케 하며 상호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소 기능”, 행정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시민에게 민원을 안내하는 “민원안내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2. 도입배경

가. 시의 행정여건

(99. 12월말 현재)

- | | |
|----------------------------------|------------------------------|
| ○ 인 구 : 782천명 | ○ 면 적 : 53.44km ² |
| ○ 가 구 : 254천세대 | ○ 재정규모 : 5,912억원 |
| ○ 기업체수 : 8,995개 | ○ 공무원수 : 2,008명 |
| ○ 주 택 수 : 153천동 | ○ 주택보급률 : 74.6% |
| ○ 행정구역 : 3개구, 35동, 1076통, 6,640반 | |

나. 도입배경

-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73. 7월 시 승격 이래 산업화·도시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밀집하게 되고 지난 20여 년

간 수도권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를 나타낸 도시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다양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도시기반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은 점차 열악해져 가며 시민의 욕구증대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표출로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민보호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관선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행정개혁 의지와 맞물려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추진경위

- 96. 4. 15~4. 24 옴부즈만제도 운영실태 조사(프랑스, 스웨덴, 일본)
- 96. 5. 28 옴부즈만제도 관련 조례 심의
- 96. 6. 15~7. 4 조례안 입법예고
- 96. 7. 1 지원기구 및 정원 승인 요청
- 96. 7. 28 옴부즈만 준비요원 확보(3명)
 ※ 행정 6급 1명, 7급 1명, 기능 1명
- 97. 1. 17 조례 공포
- 97. 2. 12 시행규칙 제정
- 97. 2. 13 옴부즈만 공개선발 공고
- 97. 3. 31 선발자 시의회 위촉 동의
- 97. 4. 14 옴부즈만사무실 확보
- 97. 4. 21 제1대 옴부즈만 지명 위촉
- 97. 5. 1 옴부즈만제도 도입 본업무 개시
- 97. 9. 8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8명)
- 98. 3. 10 제1차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시의회)
- 98. 6. 17 민선2기시장 취임에 따른 옴부즈만 업무보고
- 99. 2. 10 제2차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시의회)
- 99. 7. 10 제2대 옴부즈만 지명 위촉
- 99. 12. 10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확대구성(18명)
- 2000. 1. 4 옴부즈만 1명 추가위촉

4. 형 태

- 96년 4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으로 지방 옴부즈만제도를 권장하였으며 명칭을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로 하고 시·구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사무관할로 하며 합의제 위원회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던 바

- 95년도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96년도에는 서울시 강동구·양천구에서도 역시 조례를 제정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을 시의원이나 시의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시와 시의회로부터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처리업무도 시민의 불편사항 처리나 생활민원 해소가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근자 없이 위원회 형태로 운영됨에 책임의식 결여, 월1회 주기적인 회의소집으로 고충접수 사안별 신속처리 불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규연찬, 현장조사 곤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진정한 옴부즈만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과감히 독립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였고 주3일 상근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제도의 단점을 배제하였습니다. 담당업무도 시민의 불편사항, 생활민원 해소보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을 주된 업무대상으로 하고, 독립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옴부즈만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음

5. 옴부즈만 위촉 및 지원기구

가. 옴부즈만 위촉

1) 인 원

- 조례상 옴부즈만은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시민옴부즈만으로 하고 1인만 위촉할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시민옴부즈만이 되며,
- 우리 시의 경우 우선 2명만 선발지명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 제3차연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67건으로 향후 고충민원이 폭주하는 등 본 제도가 완전 정착 단계에 이르는 시점에 추가로 위촉하고 추가 위촉시에는 각각 전문분야가 다른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상호보완과 고충민원 성격별로 업무를 전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자 격

- 옴부즈만제도 정착에 가장 큰 관건은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훌륭한 옴부즈만을 선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시는 조례상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를 옴부즈만으로 지명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는 물론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 ①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부천시의회 의원이나 부천시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봉사 단체에서의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함

3) 임기 및 근무조건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 가능)
- 근무조건
 - 보수 : 일반직 공무원 4급 10호봉 상당(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만 인정)
 - 근무 : 주3일 근무(1일 근무시간 7시간)
 - 연가 : 연11일 이내
 - ※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인정

4) 선발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라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며,
- 5인의 선발위원회(시의원 2명을 포함)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1명을 선발 의회 위촉 동의를 받아 시장이 지명위촉

나. 지원기구

- 96. 7. 1 읍부즈만 지원기구 및 정원승인을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수 동결 방침으로 승인받지 못 하고 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96. 7. 18 감사담당관실 내의 3명(행정6급, 행정7급, 기능 각 1명)을 읍부즈만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요원으로 발령하였으며,
- 96. 12. 28 의회의 조례안 심의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토록 수정 통과되었으나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97. 3. 31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례를 개정
- 97. 4. 14 읍부즈만사무실을 시의회청사 내에 설치하고 준비요원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발령하였던 3명의 직원을 97. 7. 18 읍부즈만실로 발령 고충민원 조사공무원으로 활용하게되었으며 98. 10. 15 행정조직 개편에 이어 현재에는 2명의 고충민원 조사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내무부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신청 내역>

구분 직렬	계	사무간사 (6급)	조사공무원 (7급)	업무 보조원
계	6	1	4	1
행정	2	1	1	
토목	1		1	
건축	1		1	
보건·환경	1		1	
기능	1			1

6. 고충접수대상민원

가. 신청대상

-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 ※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포함
-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
 - ※ 직원의 비위, 직권남용, 지연처리, 유권해석 등

※ 주된 민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원으로 하며 정책결정으로 다수민원 발생이나 특히 시민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 민원의 최종 판단은 읍부즈만이 결정〉

나. 신청제외 대상

- 의회에 관한 사항
-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판결·재결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허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
- 고충민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제외

7. 처리절차 및 요령

가. 고충의 신청

-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방문 신청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거동불편, 입산부, 노약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320-2614) 또는 FAX(320-2089), 인터넷(<http://city.puchon.kyonggi.kr/>), 대리인 신청이

가능

- 신청시 기재사항은 고충신청서에 성명 및 주소, 고충민원 발생 일시, 사유, 타 구제제도신청을 6 하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필요시 공문, 영수증, 도면, 현장사진 등 근거서류 첨부

나. 고충의 접수

- 고충민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고충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읍부즈만의 선결을 득하여 처리

다. 고충의 조사

- 접수된 고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조사 착수
- 시의 관계부서에 고충조사 취지 통보
- 관련부서의 서류열람, 담당직원의 현황 청취
-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
- 고충의 조사가 1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시 신청인에게 지연 통보

라. 조사결과 처리

- 고충조사 결과 민원인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시의 해당부서에 시정, 취소,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권고·의견표명
- 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계획)를 읍부즈만에 통보
- 권고·의견표명을 받은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도 역시 15일 이내에 이행치 못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읍부즈만에 통보
- 시의 관련 부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의견표명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감사의뢰,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 보고, 필요시 언론에 보도 등을 통하여 이행토록 압력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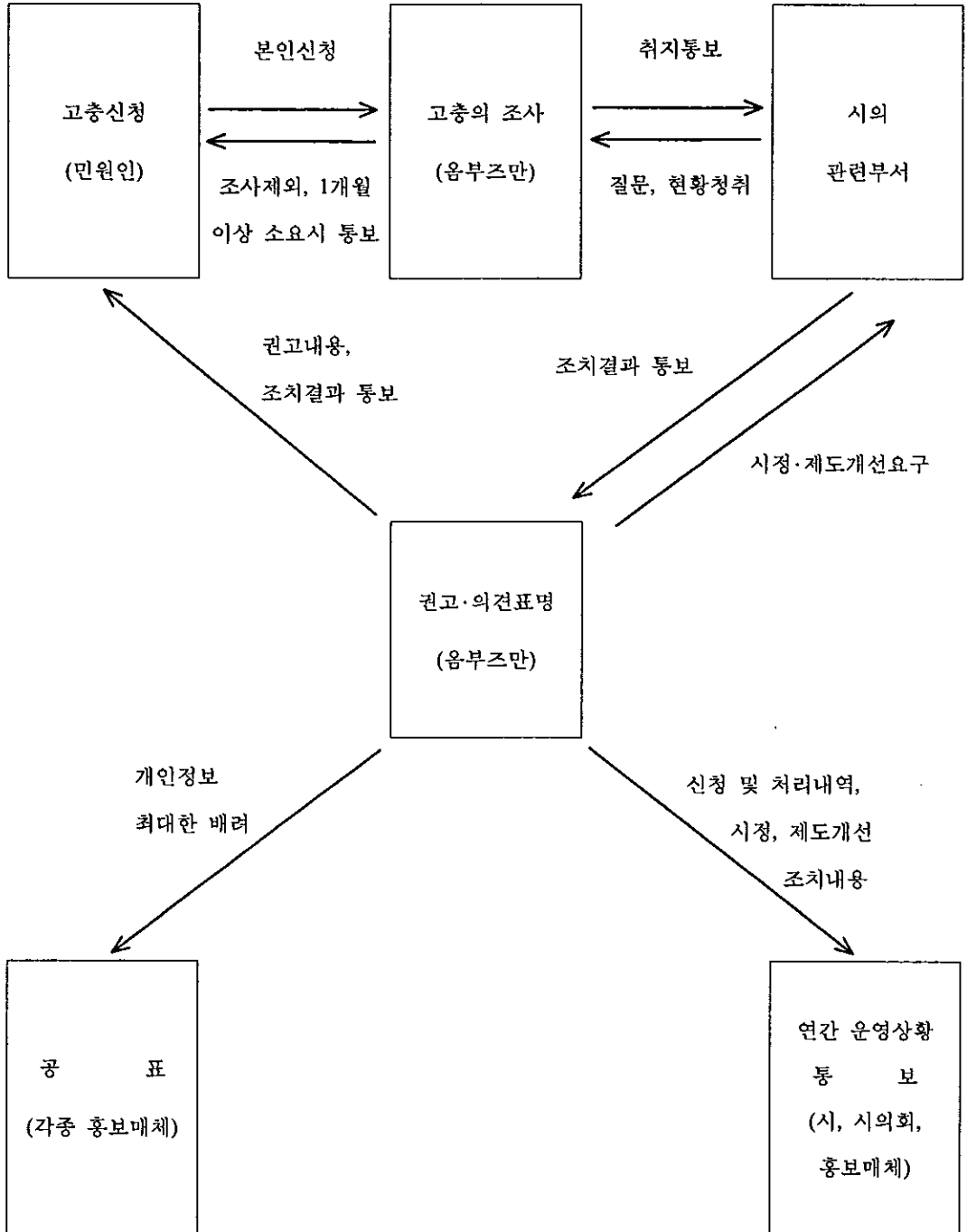
마. 신청인에게 통지

- 고충조사 제외대상이 되거나 고충조사 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과정, 관련법규, 정당한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시에 권고·의견표명을 하였거나 조치결과(계획)를 시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도 신청인에게 통보

바. 공표 및 운영상황보고

- 시에 권고·의견표명, 시의 조치결과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하고
- 당해연도 12월말까지의 연간 운영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언론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
- 운영상황 보고서는 신청의 건수, 고충조사 건수, 권고·의견표명내용, 시정, 제도개선 등 조치내용 등을 기록한다.

고충민원조사처리 흐름도



8. 읍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

○ 근 거 : 읍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

〈 목 적 〉

○ 읍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써 고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코자 함

○ 구성인원 : 18명

○ 위 원 장 : 2명(읍부즈만)

○ 위 원 : 15명

※ 대학교수 2, 변호사 2, 시의원 1, 공무원 1, 전문직업인 9

○ 간 사 : 1명(읍부즈만 담당)

○ 임 무

○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역할과 중대 결정사안에 대한 논의 및 공개토론

○ 필요시 관련공무원 및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읍부즈만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 역할

○ 회의개최 : 분기1회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99년도 회의개최 : 정기회 2회, 임시회 3회

○ 읍부즈만자문위원회 명단

구분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위원장	부천시시민읍부즈만	신철영	원미구 중동 1156	320-2075
"	부천시시민읍부즈만	이강용	원미구 중동 1156	320-3689
위 원	가톨릭대 교수	정자환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340-3260
	가톨릭대 교수	김영준	"	340-3260
	변 호 사	권규대	원미구 상동 448 미성 2층	324-3491
	변 호 사	장백규	원미구 상동 442 신안 507	325-0123
	시 의 원	오명근	원미구 상1동 393	321-7337
	인터넷 전문가	김일섭	원미구 도당동 124	0344)962-1369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노무사	최삼식	원미구 상동 320-1 교전빌딩	666-9994
	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원미구 중동 1156	320-2033
	세무사	손진홍	원미구 중동 1060-7	323-4747
	법무사	김경훈	원미구 상동 442 신한 B 303호	324-9093
	법무사	노희수	오정구 원종동 280-15 한실 B 4층	679-1450
	선일측량설계공사대표	이계홍	원미구 원미1동 92-1	611-7145
	(주)부천건축사사무소장	김용남	원미구 원미1동 92-2	653-8811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태연	원미구 심곡2동 153-6	668-1011
	춘의·한라사회복지관부관장	엄미선	원미구 춘의동 237	653-6131
간사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원미구 중동 1156	320-2076

9. 전문조사원 임명

-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사원은 3명 이내로 임명이 가능하며 선발방법은 옴부즈만이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
- 전문조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전문조사원의 위·해촉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및 부천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준용

- 우리 시의 경우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현시점에서는 전문조사원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옴부즈만이 3명까지 위촉될 경우 전문조사원의 채용을 재검토
- 제도정착시까지 당분간 조사원 역할을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

○ 전문조사원의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1.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는 기사2급 자격소지 당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

III.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1. 총괄

- 읍부즈만제도 도입시행 제3차연도인 1999. 1. 1일부터 1999. 12. 31일까지 고충민원접수는 총 67건으로 1주 평균 2건 정도가 접수되었으며 63건은 종결처리하였으나 3건은 처리 중에 있고 1건은 읍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제외 통보하였습니다. 고충조사 결과 공무원이나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신청인에게 불가통보한 건수가 16건, 신청인에게 단순상담이나 안내 12건이고, 시에 대하여 권고·의견표명한 건수는 총 35건으로 시정하거나 제도 개선한 실적은 49.2%인 31건이며, 시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건수는 4건이다.
- 또한 시민고충사항으로 접수하지는 않았으나 전화 등을 통하여 요구한 쓰레기처리, 가로등 문제, 주차단속, 불법광고물제거 등 경미한 각종 생활민원을 월 평균 10여 건 접수받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처리함으로써 읍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제3차연도에는 고충처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접수 건수	본인취하 (처리중)	조사제외 통보	조사결과 처리현황						기타 (경미한 생활민원)
				계	불가 통보	상담 및 안내	권고·의견표명			
							계	수용	수용불가	
계	163	5	5	153	38	34	81	72	9	256
97 (제1차연도)	36	1	3	32	8	6	18	16	2	18
98 (제2차연도)	60	(1)	1	58	14	16	28	25	3	107
99 (제3차연도)	67	(3)	1	63	16	12	35	31	4	131

2.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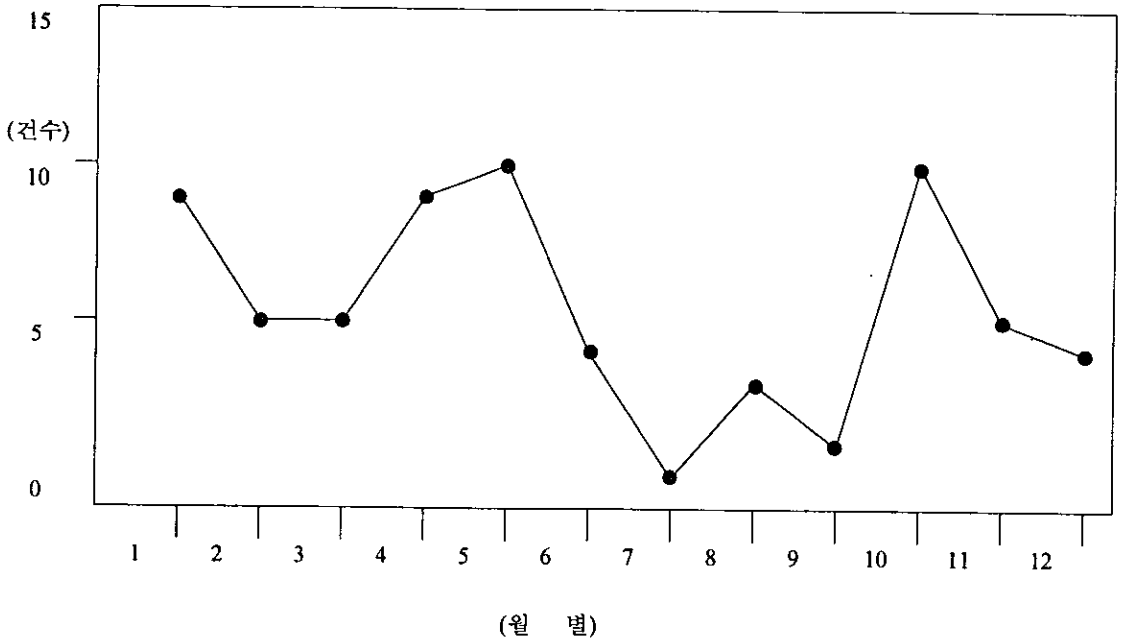
가. 월별 접수현황

○ 고충접수는 총 67건으로 월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5월과 10월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계 휴가기간인 7월이 1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읍부즈만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도 고충처리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제4차연도에는 읍부즈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월별 고충접수 현황〉

(단위 : 건)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7	9	5	5	9	10	4	1	3	2	10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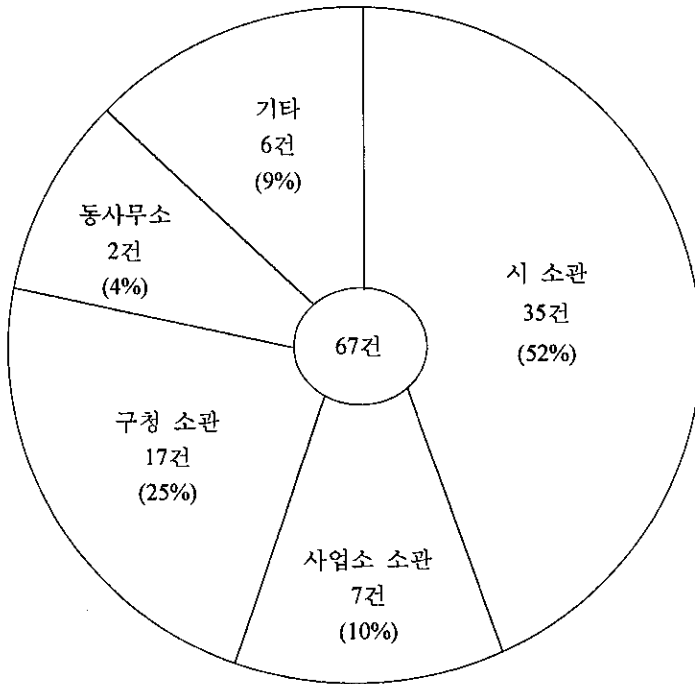
나.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 67건의 고충접수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시 분청 소관업무가 35건, 시 사업소 소관이 7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고충이 6건으로 자동차등록업무가 대부분이고 구청 소관 업무는 17건이며, 동사무소 업무는 2건, 기타 6건이다.

○ 또한 행정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시·건설과 교통 및 차량분야가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와 건축, 주택분야 각 5건, 상·하수도 분야 2건, 보건환경분야 4건, 인·허가 등 일반행정분야·기타가 19건으로 고충민원의 범위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관부서별 접수현황〉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계	도시·건설	차량 및 교통	건축·주택	세무	상·하수도 가스	보건환경	일반행정·기타
67	16	16	5	5	2	4	19

3.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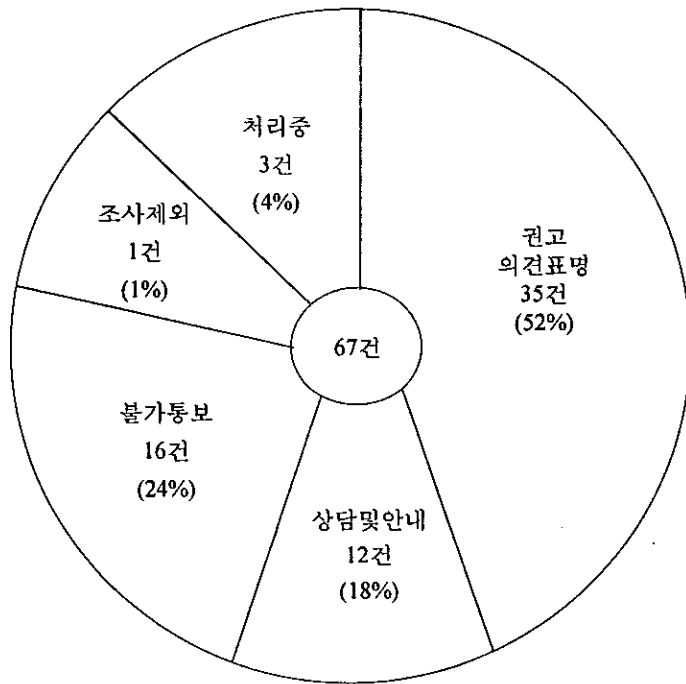
□ 처리내역별 현황

- 접수된 67건의 고충민원 중 6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부천시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에게 조사제의 통보 안내해 주었고
-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나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고충신청인에게 불가 통보한 건수가 16건이며 법적, 제도적 절차를 몰라 고충을 신청한 12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자문위

원에게 자문을 받아 친절히 상담 안내해 주었으며

- 고충조사 결과 고충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부서에 시정하도록 권고·의견표명한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시의 방침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한 건수는 3건이고,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취소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건수는 28건으로 총 31건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시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하므로 수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충처리 현황〉



IV. 처리사례별 세부 내용

1.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1)

- 통행인도 건물도 없는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하였음에도 불법주차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부과취소 요청

□ 조사 및 조치내용

- 현지확인 조사결과 주차를 했던 원미구 중동 000번지는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였으나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게첩하여 불법주정차를 금지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이 됨에 따라
- 당해 고충신청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과태료를 납부토록 권고하였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적법함을 원미구청에 통보하고 고충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납부토록 권고

2. 도로점용허가 위치변경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2)

-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환경미화박스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충민원인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는 바 기존 허가 장소를 원미보건소 정문 우측으로 변경하고자 함

□ 조사 및 조치내용

- 상기 고충민원인은 원미구 심곡2동 000번지상에 96년 9월 24일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동 장소에서 구두수선 영업을 해오던 중 환경미화 박스 앞에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은 물론 고충당사자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낀다며 기 허가된 장소를 원미보건소 정문 우측으로 이전 설치를 원하는 민원으로
- 상기 고충민원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원미보건소 정문 우측지점은 민원인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특히 본건으로 감사실에 원미구 명예감사관이 민원 신고하여 99년 1월 자진철거한 사실도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99년 1월 21일 현장을 방문 고충민원인을 만나 구두수선 시설물 박스를 보건소 정문 우측에 설치함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3. 취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3)

- 고충인은 원미구 상1동 000번지 00마을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납부고지일인 98. 11. 25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98. 12. 23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고지서를 전달받게 되었으며 납기일인 98. 12. 25까지 취득세를 납부할 충분한 기간이 없어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취소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본 조사건 원미구 상1동 000번지상 00마을 아파트 00동 00호 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 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법무사에

위임, 대리로 동 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신고토록 한 사실이 있고 98. 11. 25 취득세 납부 고지된 바 있음

- 민원인이 98. 12. 25일이 납기인 납부고지서를 98. 12. 23 분양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납기경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함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취소처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임
-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자진신고를 받아야 하나 법무사가 대리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함으로 납부고지서를 법무사에게 주었으며 법무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98. 12. 23 납부고지서를 관리사무실에 송달한 것은 관세관청의 과실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충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취소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납기경과 가산세 부과취소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서에 직권처분 등 가산세 부과취소 처분토록 권고하였으나 본건 당사자인 납세자가 99. 1. 7 가산금을 자진납부함으로써 내부종결 처리됨

4.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개별지급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4)

- 원미동 000번지(도로 2,312㎡)의 도로편입토지 매입 보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이 개별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 지번 소유주에 대해서는 개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 동 지번에 대한 토지대금 보상 조속 조치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원미동 000-00번지 고충인의 토지는 81. 7. 13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195호)된 도로로 97. 10. 13일 000 외 3인이 본 토지를 취득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 인천지법 부천지원 98가단 8808호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소 진행 중 98. 9. 24 선고하여 98. 10. 16 판결 확정된 사건임

- 판결에서 부천시는 원고 000 외 3인에게 금 10,634,342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사용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음
- 따라서 부천시는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98. 12. 8일자로 이자를 포함하여 부당이득금 11,592,890원을 이미 지급하여 이 사건을 종결하였기에 부당이득 반환금의 개별지급 조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토지대금 보상건은 시의 재정상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확보치 못하였으나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조속히 토지대금을 보상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부당이득 반환금 개별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조치 불가함을 고충인에게 통보하고 토지매입 보상 건에 관하여는 99.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히 토지대금을 보상토록 권고 조치하여
- 99년 제2회 추경에 예산반영 조치완료하였음

5. 주민세 미납 차량 압류 해제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5)

- 92년 부천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였으나 동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경기 37머 0000호 차량 압류는 부당함으로 차량압류 해제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92년 부천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건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함으로 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였으나 부과된 소득할주민세는 체납되어 경기 37머 0000호 차량을 압류 조치한 사실이 있음
-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통칙 28-2(재산의 귀속) 및 통칙 3-1-10(재산의 선택)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한 경기 37머 0000호 차량은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수 있고
- 주민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세 압류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은 통칙 3-1-10(재산의 선택)에서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압류요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타당한 압류라고 할 수 있겠으나
- 고충인이 요구한 차량압류 해제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조건) 규정에 의하여 그 해제요건이 충족되므로 압류해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의 요구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세는 부과취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차량압류 해제할 것을

권고 조치하여

- 99년 2월 1일 압류조치 해제하고 주민세는 부과취소하였음

6. 차량 주정차 과태료 해제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6)

- 경기 37러 0000차량의 주정차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므로 시정조치 및 압류해제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충인 000 소유차량 경기 37러 0000 차량등록원부(갑) 공부상에 98. 8. 14 주정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사실이 있고
- 차량압류 해제 조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을 방문 압류해제 요청 중 관계 공무원과 심한 언쟁이 있어 고충건을 해결치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고충인이 압류요건인 과태료만 납부한다면 그 해제요건이 충족될 것이므로 과태료 수납 후 차량등록 해제 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후 차량압류는 해제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 고충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량은 압류해제하였음

7. 괴안동지역 가스공사 시공 촉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7)

- 괴안동 00-00번지 일대 가스공사 중단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한 공사 시공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상기 고충민원인은 98. 11월 중순 삼천리도시가스(주)가 괴안동 00번지 일대의 29가구와 가스공사 계약을 맺고 21동(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6가구는 99. 1. 26 현재에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임

□ 진행 및 사후관리

- 상기 고충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역은 가스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이 98. 11월 접수한 바 있고
- 99. 2. 18일 현재 본건에 대한 세부추진 과정을 조사한 바 본 사업은 이면도로 소형공사(10m 미만)로서 소사구청 건설과에 기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항이며
- 상기 고충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99. 3월한 공사가 시공되도록 부천시청에 권고하여 시공업체인 00건설과 협의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통보하고 고충민원인에게는

부천시와 00건설간 협의 완료된 사항과 가스공사는 조속히 착공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 99. 8. 4일 공사완료하였음

8.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 배치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8)

○ 98. 10월 오정구청 취업센터에 취업알선을 신청하였으나 99. 1월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조 등 공공근로 배치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본 조사건 오정구 원종1동 00번지 00아파트 000는 98. 9. 9 오정구청 취업정보센터에 행정보조(공공근로)로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 등록한 사실이 있고

○ 오정구청 취업정보센터는 광역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 취업알선하여 주고 있으며 99. 1. 29 부천인력은행에서 동일 열기공업(주)에 취업알선하였으나 야적장 사포질 등 적성과 직종에 적합하지 않고 신체에 무리여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 고충인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구직등록만 하면 공공근로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 공공근로 배치 통보를 기다렸으나 미신청으로 공공근로사업 투입이 지연되었고 오정구청 취업알선창구 담당자에 의해 99. 2. 4 공공근로사업에 지원 신청되었음

○ 99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는 98. 12. 19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오정구 관내에는 98. 12. 19일 2,115명이 공공근로 신청을 하였으나 99. 2월 현재 893명이 미배치 되었으며, 배점 결과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이 요구하는 보육시설원 보육사 보조 및 행정보조 공공근로 지원사업 직종에 조속히 투입하여 고충을 해결토록 해당부서에 권고 조치하여

○ 차기 공공근로사업 중 적성에 맞는 직종에 배치토록 하였음

9.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취소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9)

○ 오정구 오정동 000번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오정구청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와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시와 협의요청 결과 토지형질변경 허가 불가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오정구 오정동 000번지에 99. 1. 11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98. 1. 25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5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불가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통보한 사실이 있음

○ 동 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 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변경 중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면 건축물 철거 등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4조3항3호에 의거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단순히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불확실한 사유만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 동 번지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 후에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의 요구 주장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건축허가 처리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 조치하여
- 허가권자인 오정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제협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 99. 5. 1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음

10. 자동차세 납부독촉 부당

□ 고충의 내용(고충 99-10)

- 납부기한이 오래 경과된 94. 3/4분기 자동차세 납부독촉에 대하여 민원인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영수증이 없다고 납부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

□ 조사 및 조치내용

- 상기 고충민원인은 94. 6. 21일부터 94년도 3/4분기 과세기준일인 9월 1일이 지나도록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거주하여 왔으며 소사구청에서는 심곡본동으로의 전입사실을 10월 24일 통보받고 즉시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음은 정당하였으나
- 고충민원인의 전 주소지 관할관청인 오정구청에서는 주소변동사항을 늦게 통보받아 부과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을 착오 부과하였으며
- 상기 고충민원인은 오정구청에서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를 9월 30일 납부함으로써 소사구청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94. 3/4분기 자동차세가 체납으로 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이중 부과되어 체납 처리된 민원인의 94. 3/4분기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취소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세 대장을 정리토록 부천시에 권고하여
- 99년 3월 5일 부과취소 조치함

11. 차량 거주지 이전등록 조치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11)

- 고충인은 96. 9. 3 현 거주지인 00마을 00동 00호에서 중3동 민원담당직원의 거주지 이전등록 신고 안내방송을 듣고 00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면허증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마쳤고
- 전출입 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자동차면허세 납부서가 전 거주지로 통보되었기에 심곡본1동으로 문의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증(뒷면)만 전입신고되었고, 자동차등록은 전입이 안 되었다 하여 컴퓨터로 전·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민원담당직원의 책임을 묻고 차량이전 등록코자 관할 등을 방문 차량등록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민원담당직원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되어 처리가 불가하다함은 행정행위의 부당함이 명백함으로 조속히 차량이전 등록 조치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충조사결과 고충인은 소사구 심곡본1동 000번지에서 96. 9. 3 현재 거주지인 00마을 00동 00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주민등록 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주소지를 변경 신고하였음
-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동령 제13조1항 신청서 작성 날인, 동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1항 15일 이내 신청, 1항 전입신고서 자동차등록번호 기재,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1항1호, 동규칙 제30조1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전·출입신고를 마쳐야 하나
- 96. 9. 3 전입신고 당시 본인이 작성 신고한 신고서의 자동차등록번호 기재란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음
- 동 전입신고서 이면 유의사항 2에는 전입신고시 전 가족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변경 정리토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동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어 민원담당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할 것이므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1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3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조사 후 부과금액을 문서통지하고 동시행령 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10일 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4항은 과태료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어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의 요구 주장에 대하여는 본건 조사결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됨으로 조치 불가 통보하였음

12. 밭샘 노상주차 과징금 부과 부당

□ 고충의 내용(고충 99-12)

- 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로서 자신의 불법주차 행위는 인정하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나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내용

□ 조사 및 조치내용

- 상기 고충민원은 자신의 차고지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임을 알면서 노상 주차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과징금 부과 담당계장이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 당시 담당계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과징금 부과취소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함
- 따라서 고충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나 불법주차 사진, 본인 진술서 등을 참고컨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3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교통행정과에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였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고충민원에게는 과징금 부과는 타당하니 기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보

13. 일관성 없는 업종변경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13)

- 고가교 안전관리에 따른 업종변경 지시 후 철거요구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현 황

- 소 재 지 : 소사구 송내동 000번지
- 전용면적 : 21평방미터(6.35평)
- 당초용도 : 화원 및 휴게실

○ 조사내용

-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부분에 대해
 - 00고가교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건설 58150-257(96. 2. 8)호로 화기를 사용치 않는 타입종으로 업종변경 통보를 하고서도
 - 건설 58150-778(96. 4. 26)호로 자진철거 통보를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업종변경 지시의 번복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보상 요구 부분에 있어
 - 고충민원인은 휴게실을 하던 중 96. 2. 8 업종변경 지시를 받고 2. 9~2. 18일까지 약 5,000,000

원의 경비를 들여 문방구를 설치하였으나 동년 3월 중순경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문방구
까지 철거하라 하였고 동년 4. 26일 자진철거하라는 공문까지 받아 철거를 함으로써 그로 인
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 문방구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소재지 인근 주민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문방
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 특히 중요한 것은 고충인이 주장하는 문방구 이전의 휴게실 시설이 당시의 사진과 같이 지
금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고충민원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민원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피해보상은 불가하며 고충민원인의
불법행위는 관련업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음

14.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업 불허는 부당

고충의 내용(고충 99-14)

- 자동차 부분정비업(3급)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약 50만원이 체납되어
정비업 허가를 하여 주지 않음은 부당하니 체납세의 분납조건으로 허가 조치 요구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충조사결과 고충인은 소사구 피안동 00번지에 거주하여 오면서 99. 3. 31일까지 98. 1차 정기
종합토지세 67,050원, 98. 1기 정기 자동차세 171,500원, 98. 2기 정기 자동차세 163,100원, 98. 재
산세 정기 78,220원 등 총 479,87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 자동차 부분정비업 허가를 득하고자 99. 3. 6 부천시 교통행정과로 동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인·허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은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정비업을 불허함은 조세징수
임시조치법 제9조(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등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할 것임

진행 및 사후관리

-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①항3호 또는 동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시행
령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에 준한 범위에 해당하여 체납액 분납 조치가 가능하니
- 부천시에서는 BC카드로 전 세목의 체납된 세금을 수납하고 있어 BC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분납
안내문을 송부

15. 부당한 형사소추로 중단된 운전경력 인정 요청

고충의 내용(고충 99-15)

○ 고충민원 사건개요

- 사건일시 : 1991년 5월 26일 22시 55분
- 사건발생장소 : 송내동 00번지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 사건내용 : 교통사고 발생 후 뺑소니로 몰림
- 피해내용 : 중상 1명
- 처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91. 5. 26)
 - 취소기간 : 91. 5. 26 ~ 92. 5. 26(1년)
 - 미결구속 : 91. 5. 29 ~ 91. 8. 20(84일 간)
 - 유죄선고 : 91. 8. 20(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 면직처분 : 91. 8. 31~93. 1. 31 (○○택시)
 - 항 소 심 : 92. 4. 20(서울고법 : 무죄판결)
 - 검사항소 : 92. 11. 27(대법원 : 무죄 확정판결)
 - 운전면허 재교부 : 93. 1. 31
 - 형사보상책정 : 93. 5. 21(보상액 1,260,000원)

○ 고충신청 이유

- 고충신청인은 91. 5. 26 22:00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구속집행됨으로써
- 88년 6월부터 계속 근속해 오던 택시회사에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91. 8. 31~93. 1. 31일까지 면직처분이 됨으로 인해
- 부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로 인해 발생한 면직처리 기간인 91. 8. 31~93. 1. 31일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운전을 했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 동 규정 제2조 별표의 제1순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해 개인택시면허 탈락이 예상되므로 국가로부터 받은 개인의 권리침해 및 피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임

□ 조사 및 쟁점내용

- 동 사건을 수사처리한 부천남부경찰서 및 부천시 교통행정과, (주)00회사에 본건 고충처리를 위해 방문, 질의, 답변요청 등을 통해 본 고충조사를 해 본 결과
- 사건을 수사처리한 부천남부경찰서로부터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정을 받은 국가처분 사항이므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 민원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00회사에서는 이러한 처분결과를 참

착해 주기를 희망” 하고 있으나

- 부천시 교통행정과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산정함이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고
- (주)00회사에서는 고충인의 입장이 안타까운 일이나 경력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충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면직처분 당한 기간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조사자 의견

-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 전 공무원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함께 고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 고충인은 본인과는 관계없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일방적 피해를 입은 자로서 92. 11. 27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93. 5. 21일 형사보상이 확정되어 1,260천원을 형사피해보상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본인과는 무관한 사건에 휘말려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속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계속 연장될 수 있었던 근속기간 중단 등 피해를 입었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계속 연장될 수 있었던 근속기간이 운전면허취소라는 부당한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면직처분되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 부천시장은 관련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제1항제3호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사유서 또는 공소 부제기 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공소문 제기 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및 국가기관 또는 관할 지방 검찰청의 기소에 의해 면허취소 또는 면직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결과

- 동 조례의 개정을 부천시시민음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의견표명하였으며
- 시에서는 동 규정을 개정하여 면직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여 순위를 심사한 후 개인면허를 발급하였음

16. 부동산증개업소 행정처분 요구

□ 고충의 내용(고충 99-16)

○ 소사본3동 00번지 단독주택 소유주는 부동산중개인의 부당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관할청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부당한 중개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충인은 소사본3동 00번지 주택 임대인과 고충인간 임대차 계약을 할때 부동산중개인이 96. 8. 17 임대차계약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없이 계약 체결토록 하였고

○ 96. 8. 19 동지번 단독주택에 고충인이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98. 6월 중순 동주택 경매처분으로 강제 퇴거된 사실이 있으며

○ 고충인이 관할청을 방문하여 부동산중개인의 부정사실 해결 방법을 요구한 바 있으며 행정처분을 요구함으로써 관할청에서는 1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한 사실이 있음

○ 99. 3. 8 고충인이 관할청을 재차 방문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결과에 납득이 안가고 처분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고충민원으로

○ 98. 8. 26 고충인과 중개업자 000이 합의를 작성 후 98. 8. 31 00부동산 중개업자 000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고 청문회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98. 9. 15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1개월(98. 9. 17 ~ 10. 16)의 행정처분이 입증되고 있어 관할청의 처분조치는 적법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인 000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의 요구 주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규상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하고 이해 설득시킴

17. 금융거래 제재조치 해제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17)

○ 부천시에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00번지 거주 민원인의 지방세 체납(금액 : 9,761천원)을 사유로 한국금융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지정요청하여 각종 금융거래상 제재를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이의 해제를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충인 의견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00번지 민원인은 1980~1993. 11월말까지 기업활동을 하던 중 불의의 회사부도로 전 재산이 경매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채무는 모두 변제하

였으나

- 부천시가 고지한 지방세 9,761천원이 체납되어 97. 11. 27 동 체납액은 결손처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금융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거래가 제재되어 향후 10년 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고충인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부천시에서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하면 경제활동을 재 개하여 기이 체납되었던 지방세는 분납 형식으로 완납코자 함

○ 부천시 의견

- 현재 상태로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는 불가하고 다만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할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 부천시가 한국금융연합회에 통보한 경제활동 제재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최후 압박 수단으로서 체납액 9,761천원의 일부라도 우선 납부하고 잔액분에 대하여는 위 체납자로 하여금 확인 각서를 징취한 뒤 분납토록 함으로써 부천시 체납 액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해결하고 고충민원의 고뇌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천시에서 제재한 본건은 조건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고충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납액 일부를 징수한 뒤 분납 형태로 완납한다는 각서를 징취한 후 조건부 해제할 것을 관련부서에 권고하였으며
- 분납을 조건으로 부천시 세무과와 민원인과 협의하여 민원해결

18. 일조권 피해 시정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18)

- 00연립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망함

□ 조사 및 조치내용

음부즈만 자문위원인 측량사, 건축사와 함께 건축허가 설계도서 수준측량, 건축물 현황 측량도를 각각 비교 분석하여 인근 피안동 000-0, 000-1, 000-2 각각의 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 000-0번지

- 대지의 고저차 $50.947 - 48.13 = 2.817$
- 평균 지표면 $(2.817 + 0.45) \times 1/2 = 1.6335 \approx 1.64$
- 일조권 산정에 의한 이격거리(현공정 4층 건물높이 + 평균지표면) $(11.52 + 1.64) \times 1/2 = 6.455 \approx 6.5$
- 현황측량 성과도상 이격거리 7.2

- 약 60cm 정도 여유있게 이격거리가 확보됨
- 000-1, 2번지
 - 대지의 고저차 $49.954 - 47.63 = 2.324$
 - 평균 지표면 $(2.324 + 0.45) \times 1/2 = 1.387 \approx 1.39$
 - 일조권 산정에 의한 이격거리 (현공정 4층 건물높이 + 평균지표면) $(11.52 + 1.39) \times 1/2 = 6.5$
 - 현황측량 성과도상 이격거리 7.2
 - 약 70cm 정도 여유있게 이격거리가 확보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상기와 같이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설계상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 하나 건축물 사용검사시 최종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본건과 관련하여 00연립주택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건으로 자체 종결 처리함

19. LPG차량 구조변경승인 즉시 처리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19)

- 장애인 차량 LPG 구조변경 승인 신청시 즉시(당일)처리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민원 신청시 즉시(당일)처리하여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또는 며칠씩 다니는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자동차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진행 및 사후관리

- 장애인 차량이 LPG 구조변경할 때 구조변경 승인은 민원사무처리기준에 10일로 되어 있으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한 당일 처리토록 하고
- 또한 장애인 민원 신청시에는 즉시(당일)처리토록 한다는 자체 규정을 제정토록 권고조치

20. 영안실 증축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20)

- 00병원과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으로, 매일 계속되는 영안실 유족들의 곡소리와 병원 증축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 수차례의 항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무성의와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 최근 병원측에서 부적절한 가격으로 가옥매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함으로 시정을 요망함

□ 조사 및 쟁점예상 부분

○ 조사내용

- 동 고층인의 거주지역은 00병원과 연결된 주택지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병원 증축공사 소음 및 영안실 유가족들의 오염에 따른 생활의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동 고층과 관련하여 지난 98년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에 수차례의 진정과 항의를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장기간 계속된 점이 인정되며
- 98년 4월 13일 000 의 19명이 소음피해를 사유로 진정한 내용의 처리를 시작으로 동 고층민원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사항 8건의 진정 및 신고사항 접수 처리가 계속되어 왔으며 동 고층건에 대해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하겠음

○ 적용법규

- 소음·진동 규제 및 행정처분 관련법규 조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제2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소음진동 규제조항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88조 행정처분 근거조항

○ 행정규제 및 처분내용

- 98년 4월 13일 000 의 19명의 진정건 의 7건의 진정 및 신고사항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 이 중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항으로는 생활소음 측정결과, 기준초과에 해당되어(규제기준 55dB)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한 사항과(98. 5. 16)
- 99년 3월 18일 000의 진정에 의해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초과 되어(규제기준 70dB, 평가소음 79dB)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으나(99. 3. 18)
- 이외의 모든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권고 또는 시정으로 그침으로써 관련 행정부서의 확고한 민원 고층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됨

○ 쟁점예상 및 조사자 의견

- 동 고층민원의 처리는 장기화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위에 기재한 적용법규에 따라 소음·진동의 규제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시장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입장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 침해 예방과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 명백한 만큼

- 동 고충민원과 동일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야기시켜온 00병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규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

진행 및 사후관리

-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권고하였으며
- 00병원과 주민과 원만한 보상협의를 진행되어 자체 종결처리

21.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제거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21)

- 춘의동 종합운동장과 중앙도서관 사이 약수터 진입로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 및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 약수터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음

조사 및 조치내용

○ 축사현황

- 목 장 명 : 00목장
- 주 소 : 춘의동 00번지
- 가축현황 : 소(한우) 15두, 돼지 12두, 개 100두

○ 분뇨 및 쓰레기 방치 현황

- 1일 5㎡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미가동
- 다량의 축산분뇨를 방치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산로 이용시민에게 불쾌감 조장
- 쓰레기 방치 상태는 일부의 생활쓰레기로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님

진행 및 사후관리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

- 해당부서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조속 가동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인근주민 및 약수터 등산로 이용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 시정이 안 될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명령 조치토록 권고

22.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예방책 강구 요청

고충의 내용(고충 99-22)

- 소사구 역곡3동 00번지는 일대는 우기시 고지대에서 모이는 빗물이 넘쳐 흘러

- 00번지 일대의 농경지를 침수시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기존 하수관의 우수처리능력 부족 해결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하수관 매설현황(별지도면 1 참조)

- 소사구 역곡3동(옥길동) 00번지 일대의 우수처리를 위한 기존 하수관(600mm) 매설
- 역곡3동(옥길동) 00번지 일대의 우수처리를 위한 기존 하수관(800mm) 매설

○ 문제점

- 역곡3동 00번지 일대의 우수처리를 위한 하수관(600mm)이 우기시에는 우수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됨(집중 호우시)
- 농경지 침수로 일대 경작 농민들의 불만이 상존해 있음

○ 대책

- 기존 하수관을 대형으로 교체하고 보다 지대가 낮은 곳으로 우수를 처리하여 인근 경작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우기시 농작물 피해방지와 우기시 배수능력 확대를 위해
- 하수관 D=600mm, L=111mm를 신설토록 권고조치하여

□ 진행 및 사후관리

- 99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 고지대의 우수를 800mm 기존 관로에 연결하여 침수피해 예방 조치함

23. 약수터주변 정화 및 수질검사결과 공표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23)

-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게시 요망
- 약수터 주변 일제정비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99년도 수질검사계획 및 실시결과

- 약수터 개소 : 27개소(원미 8, 소사 14, 오정 5)
- 수질검사 계획 : 연4회(매 분기별1회)
- 99.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 검사개소수 : 27개소(원미 8, 소사 14, 오정 5)
 - 검사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전개소 적합판정
 - 검사결과는 약수터에 게시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음

• 약수터 주변 시설 등 정비계획

구 별	약수터 개소수	사업시기	예 산 액	비 고
계	26		16,300천원	
원미구	7	5-6월	5,600천원	
소사구	14	5-6월	4,200천원	
오정구	5	5-6월	6,500천원	

진행 및 사후관리

- 약수터 수질 지속관리 권고 조치

24. 고속도로 소음피해 및 보상대책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24)

○ 고충민원의 개요

- 고속도로의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로 생활불편
- 공해발생원인 제공처인 한국도로공사와 감독 관청인 부천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방음벽 설치 등 대책 요구

○ 고충신청의 사유

- 소음·분진 공해로 인해 오랜기간 시달려 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 구청, 도로공사와 수차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해당관청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고충 해소가 안 되고 있음
- 방음벽 설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망

조사내용 및 쟁점사항

○ 조사내용

- 고충이 되고 있는 지역은 내동 00번지 00빌라로 경인고속도로와 6m 도로를 사이에 둔 연결된 지역임
- 00빌라는 92년 6월 13일 건축허가를 득하여(8동 128세대) 92년 11월에 준공되었고 인근에는 다수의 연립주택이 위치해 있으며,
- 경인고속도로변에는 옹벽기초 1.0M, 방음벽 3.5M(흡입형, 상단 굴절)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음
- 현재 방음벽의 높이는 주택 1층 높이로 3-4층은 방음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고충에 대해 해당부서(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측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98. 8. 31 민원회시 내용 참조)

- 00빌라 1층 주간 67

- 00빌라 4층은 주간 76, 야간 75으로 기준치 주간 68, 야간 58을 초과하고 있음

○ 고충민원과 관련한 법규 발췌

• 건축법

- 제8조(건축허가)

-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도로법

-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 제64조(원인자 부담금)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소음으로 부터의 보호) 사업 시행자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쟁점이 되는 부분

• 시(건축과)의 주장

-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 준공 처리된 건축물로서 고충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 및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도로공사의 주장

-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31조, 제64조의 규정을 들어 사업 시행자(건축주)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허가해 준 부천시에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임

□ 조사자 의견

○ 동 고충민원은 지난 95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으로(94, 고충 1374호, 95. 11) 당시 통보받은 내용은 소음 65dB 이상이고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 일 때에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고충이 되는 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8~10m이고 기 설치된 고속도로변에 건축을 한 것으로 소음발생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라고 회신되었음(95.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 그러나 당시 건축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며,

- 건축주가 건축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건축법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동 진정건은 도로공사와 부천시간 상당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나,
- 결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서 부천시와 도로공사 쌍방이 서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본건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인접주민 및 토지 소유자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쌍방 또는 일방에서 소음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건축허가권자인 부천시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국민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임

□ 각 부서별 지적사항

- 도로공사 : 고속도로에서 50m 이내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보상이 요구됨
- 부천시청 : 개인주택 건축시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방음벽 설치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동법을 개정 보완토록 입법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가 있어야 하고,
- 건축업자 : 건축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을 기피하기 위해 각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또한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 될 것임

□ 향후전망

- 고속도로변 50m 이내에는 전국적으로 각종 주택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및 예방이 필요함. 그러므로 본건을 광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도로공사, 부천시청)강구는 물론 건축과에서는 고속도로변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관련법 규정 개정(건축주의 책임한계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진행 및 사후관리

- 방음벽 추가 설치 및 보상과 관련한 소송준비 진행 중

25. 송내북부역 광장 노점상 단속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25)

- 송내북부역(상동 00번지) 광장주변에 오후 6시경부터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질서문란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 주위 영세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단속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광장주변에 오후 6시경부터 공무원 퇴근시간을 틈타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음
-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업주인 원미구 중동 00번지 금강마을 00동 00호 000 외 7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 이들은 고발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불법 포장마차 영업은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47조제2, 3호,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에 위배되는 바
- 원미구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퇴치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상가를 보호하며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을 이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들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시켜야 되겠음

진행 및 사후관리

- 불법 포장마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권고

26. 아파트 출입구의 포장마차 철거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26)

- 아파트 입구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관계로 주변환경 오염 및 교육환경에 장애가 되므로 철거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원종동 00번지 00아파트 입구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오정구청에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통보하여 99. 5. 22 자진철거하였으며

진행 및 사후관리

-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포장마차 불법영업을 근절시킬 것을 권고

27. 자동차면허세 부과취소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27)

- 98. 12. 30일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99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 99. 1. 1일 현재 사실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토록 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 의거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연도의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는 바
- 경기4르 0000 자동차는 자동차 양도증서에 의하면 99. 12. 30일 양도되어 양수인이 납부 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진행 및 사후관리

- 양수인에게 통보하여 99. 5. 19일 경기4르 0000 자동차에 대한 99년도 정기분 면허세 28,350원 (본세 27,000원, 가산금 1,3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종결 처리

28. 자동차세 부과 취소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28)

- 91년 1월초에 폐차신고를 하였음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고지되고 있어 이를 시정 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본건 해결을 위해 말소관련 각종 공부를 직접 확인하고 폐차를 했다는 인천시 소재 00폐차장에 확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소사실을 확인치 못했으며,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회신이 있었음

진행 및 사후관리

- 현행 법규에 의거 말소되지 않은 책임이 고충인에게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동차 미소유 말소등록을 하도록 권고

29.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선정 요청

고충의 내용(고충 99-29)

- 자동차 정비교육을 받고자 하나 연령이 많은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고용보험법에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재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심의기준에 의하면 선발된 경우에는 위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급변 고용촉진훈련은 95명 선발에 545명이 신청하여 심의기준에 의하여 훈련대상자를 선정한 바 88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선발하였으며
- 고충신청인은 선발점수(88점)에 미치지 못하여(74점)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

진행 및 사후관리

- 향후 고령자에 대한 취업 또는 교육 기회가 있을 경우 반영토록 권고

30. 건축 소음으로 인한 안면 방해 해소 요망

고충의 내용(고충 99-30)

- 소사구 소사동 00번지 교회 신축 현장 소음으로 안면 방해 해소 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99. 5. 28 : 현장확인 및 소음, 분진 등 방지시설 설치 여부, 소음 측정

○ 99. 6. 11 : 시 환경위생과와 소사구 건축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확인지도

○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필요시설을 즉시 설치하였음

※ 소음측정 결과 : 64.1dB

□ 진행 및 사후관리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

40. 중앙공원 일대 정비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31)

○ 공휴일 중동 중앙공원 주변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불법주차 단속 요망

○ 각종행사 및 시청 앞 차없는 거리 행사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무료사용 요망

○ 중앙공원에서의 각종 음악 행사시 소음공해 예방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공휴일 중앙공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미구청에서 99. 6. 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지하주차장 무료사용권은 현재 매주 토요일 08:00부터 일요일 24:00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각종 행사시 지하주차장 무료사용은 관계 부서에서 지하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중앙공원에서의 각종 음악행사시 소음공해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중앙공원 사용허가시 주위에 소음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계도토록 통보

32. 공장 악취 방지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32)

○ 원미구 도당동 00번지 소재 00기업에서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을 소각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폐자재나 마대 소각으로 주민 및 공장근로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 단속요망

□ 조사내용

○ 소각시설 현황

구 분	설치위치	설치일	소각용량 (kg / 시간)	소각시간 (시간 / 일)	소각대상 폐 기 물
소각시설	원미구 도당동 00번지	89. 9. 21	50	8	종이, 목재

□ 조사결과

- 현지확인 결과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은 종이와 나무로 악취가 발생할 만큼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악취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전화기, TV, 냉장고 등의 외부에 소요되는 재료생산 과정 중 압출기 최종 토출시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거하는 세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악취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됨
- 00기업의 담당부장 000로부터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 업체는 현재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정방식의 보완작업을 시험 검토 중에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동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인근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권고

33. 차량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는 양수인에게 부과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33)

- 시·도간 차량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고자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등록을 위임할 시 차량에 대한 등록지연 과태료는 차량이전 등록시 부과 징수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1. 과태료처분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3항 별표2)

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때(법 제11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일 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추가(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각 30만원)

※ 초과시마다의 뜻은 3일이 경과되고 4일부터이므로 1~2일은 절삭처리

나. 위 가)항 중 동일한 위반사항 (주소변경)을 수차례 위반한 경우

- 수개의 위반행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일괄 처리함
- 수개의 위반행위 중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 84조2항2호에 의거)

2.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등록 위임시 위임장 징구 여부

- 차량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온 경우 위임장만 첨부
- 기존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로 인정되어 도정 11250-99(99. 2. 2)호와 관련 폐지되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아니함

- 부득이 위임장 대신 인감증명서를 받아온 경우 위임장 서식에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과태료 미납부시 조치사항

- 등록과 동시에 과태료를 미납부하더라도 미납부를 이유로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줌과 동시에 기간 내에 되도록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자동차관리법시행령 25조2항에 의거)
- 과태료부과통지서 발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동법 제75조제6항)
- 과태료에 대한 압류가 된 자동차가 명의 이전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체 압류를 할 수 있음

4. 민원인의 경우

- 위임장을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위임장 대신 차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차량 변경등록을 하러 온 대리인(매매중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여 두었음
- 당시 관련서류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위임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과태료통지서만 수령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진행 및 사후관리

- 등록시에 등록지연 과태료를 미납부하더라도 미납부를 이유로 등록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등록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불가함을 안내하여 납부토록 조치

34. 차량 견인보관소 이전 요청

고충의 내용(고충 99-34)

- 원미구 중동 00번지 중동신도시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오정구 견인차량 보관소를 도시환경상,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요망

조사 및 조치내용

- 오정구 관내 불법주·정차 자동차 및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보관을 위하여 베르네천 북개도로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98. 10. 30일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확보된 원미구 중동00번지로 이전하였으며,
-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및 방치 자동차의 견인보관을 위해 견인차량보관소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상기장소는 면적이 1,046평으로 견인 및 방치자동차 보관이 용이하여 선정된 부지로 현재 3개 구 통합보관소 부지 선정을 위해 검토 중임

진행 및 사후관리

- 현재 부천소방서 앞 부지에 3개 구 통합 보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35. 교회 신축에 따른 이웃 건물 피해보상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35)

- 오정구 고강동 00번지상 00교회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인접주택의 벽체, 마당 등이 균열되고 변형으로 안전이 염려되는 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 예방대책 및 보상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오정구 고강동 00번지상의 00빌라 안전진단 및 피해보상 요망건은
- 99. 7. 15~7. 19일까지 (주)한국구조물 진단연구원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구조안전상 위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 피해보상건은 성광교회측과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

□ 진행 및 사후관리

- 교회 건축주와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종결처리

36. 납세고지서의 첩저한 교부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36)

- 99년도 재산세(건물분)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바 없으나 97년 7월 중순경에 재산세 체납세의 납세고지서(독촉장)가 교부되어 가산금 부담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 바 차후로는 납세고지서 교부시 본인이나 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여 납세고지서를 정확히 교부함으로써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납세고지서 교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함

□ 조사 및 조치내용

- 원미구 원미2동 00번지의 99년도 재산세(건물분)고지서는 교부 당시 통장이 없는 관계로 공공근로자가 교부하였으나 교부 당시 납세자 및 가족이 부재 중으로 고지서를 현관 입구에 놓아두고 왔으나 납세자가 발견치 못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
- 각종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바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치 못한 납세고지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차후 각종 납세고지서 교부시는 납세자 본인 및 가족에게 정확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시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권고

□ 진행 및 사후관리

- 99. 7. 29일 납부한 재산세액 중 가산금 4,160원은 99. 8. 12일자로 환불 조치

37. 압류된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조치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37)

- 소사구 송내2동 00번지 00빌라 거주 67세대는 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해결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85년 00건설이 건축 분양한 00빌라는 85년 00건설의 부도로 인해 입주주민이 가사용 승인을 받고 거주중인 상태로
- 본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사건 관할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압류상태를 확인한 결과
- 동건 채권자인 000 외 13명이 각각 개별 사건으로 당시 부도사인 00건설 및 토지명의자인 토개공과 토개공 등의 소유로 된 00빌라 토지에 가압류를 한 상태로서
- 이는 입주민이 각 사건별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진행 및 사후관리

- 현재 개별건에 대한 소송 및 해결절차 진행 중

38. 도시계획상 도로의 개설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38)

- 소사구 송내1동 00번지 앞의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현재는 00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 이 도로를 개설해 주면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개설을 요망함

□ 조사 및 조치내용

- 동 지구는 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 그 동안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임

□ 진행 및 사후관리

- 2000년 상반기 중 승인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 역세권상세계획 확정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고

39.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도 보습학원 설립 인가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39)

- 아파트단지 내의 생활편의 시설에 중학생 대상으로 보습학원 설립을 인가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아파트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에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의 설립인가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마목의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제열에 속하지 않으므로(보습학원은 문리분야의 보통교과 계열임) 생활편의시설에서의 보습학원 설립인가는 불가능한

사항입

□ 진행 및 사후관리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건의토록 권고하였으며
- 99. 12. 1일 관련법이 개정되어 보습학원도 설립 가능

40. 경인옛길확장공사계획 재검토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0)

-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사역세권상세계획 중 경인옛길(소사구청~소사삼거리 구간) 도로확장 구역을 현재 계획(안)의 반대편인 소사구청편으로 변경 요청
- 부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평가를 한 결과 북쪽으로 확장을 할 시 도로가 조금 굽더라도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보상비 약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

□ 조사 및 조치내용

가. 경인옛길도로확장계획(안) 추진경위(도시과)

- 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하여 경인옛길(소사사거리~삼양중기)을 남쪽 방향으로 10~8M 확장하여 도로폭 20M(4차선) 확보계획
- 98. 10. 13 : 주민 공청회 실시(의견내용 없음)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90명(토론자 5명)
 - 홍보내용
 - 공청회 개최공고 : 기호일보(98. 9. 21)
 - 동아일보 외 2개 신문 게재
 - 벚룩시장 1회, 포커스 1회 게재
 - 플래카드 7개소 게재
- 98. 11. 2 : 소사본2동사무소에서 설명회 개최(의견내용 없음)
 - 장 소 : 소사본2동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38명(주민 36, 시의원 2명)
 - 홍보내용 : 동사무소에서 실시
- 99. 6. 2~6. 17 : 상세계획 공람실시
 - 장 소 : 부천시청 도시과
 - 홍보내용
 - 경인일보, 경기일보 (99. 6. 2(수))
 - 공고문 게시 : 시청 게시판

- 가로수에 공고내용 게재 (99. 6. 12월)
- 공답자 : 000 외 20인
- 99. 6. 23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99. 7. 6 : 시의회 의견 청취 (찬성의견 채택)
- 도로선형 변경요청(주민 : 3회) : 변경불가 통보
- 99. 9. 2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
- 99. 11월중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세 계획 결정 신청 예정

나. 경인옛길 남쪽 주민 추진사항

- ① 경인옛길도로확장계획(안)을 북쪽으로 변경요청(3회)하였으나 변경 불가 통보
- ② 고충민원 접수(도로확장계획(안) 변경요청 : 99. 9. 10)
- ③ 자체예산 확보하여 변경요청 구간에 대한 토지감정평가기관에 의뢰(99. 10. 9)
 - 변경요청 구간에 대한 보상차액 금액
 - 북쪽 감정가액 : ₩ 2,772,344,500원
 - 남쪽 감정가액 : ₩ 3,361,458,200원
 - 감정가 차액 : ₩ 589,113,700원

다. 음부즈만실 주관 주민의견 청취

- 일 시 : 99. 10. 20 14:00~15:50
- 장 소 : 소사본2동사무소
- 참 석 : 16명
- 남쪽 주민 의견 : 현재의 도로확장계획(안)을 북쪽으로 변경 요망
- ※ 사 유
 - ① 자체 실시한 보상 감정평가에 의하면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 ② 경인옛길 전체적으로 확장시 소사삼거리의 시흥 방향 교통량 증가로 경인옛길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
- 북쪽 주민 의견 : 소사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된 도로확장계획(안)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판단할 경우 남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함(현재의 안)
- 공통의견
 - 조속한 시설 결정 및 공사시행
 - 현실적 보상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진행 및 사후관리

○ 현재 관계부서 및 주민간 대화 계속 진행 중

41. 매각한 증장비의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1)

- 00레미콘이 소유한 건설기계의 노후로 91. 6. 24 000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도하였음
- 99. 6. 7일 검사최고서가 통보되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 원부가 00레미콘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
- 00레미콘 소유의 건설기계를 91. 6. 24 매도하였으므로 과태료(₩1,700,000원) 부과 취소 및 등록말소 요청

□ 조사 및 조치내용

○ 건설기계 매각 현황

- 매도자 : 00레미콘(세금계산서 발행)
- 일 자 : 91. 6. 24
- 매수자 : 상 호 - 00중기

소재지 - 서울사 마포구 서교동 00번지

- 00중기는 94. 9. 28 사업부진으로 폐업(마포세무서 확인)

○ 00레미콘으로 공문 발송 현황(경기검사소에서 정기검사미필 통보 내용에 의거)

- 94. 4. 29(건설58182-774)
- 95. 3. 13(건설58182-580)
- 98. 2. 4(도로58182-384)

○ 과태료 부과 현황(차량등록사업소)(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

- 93. 5. 10~94. 5. 9 : ₩ 300,000원
- 94. 5. 10~95. 5. 9 : ₩ 300,000원
- 95. 5. 10~96. 5. 9 : ₩ 300,000원
- 96. 5. 10~97. 5. 9 : ₩ 300,000원
- 97. 5. 10~98. 5. 9 : ₩ 500,000원

합계 ₩ 1,700,000원

○ 면허세 부과 현황(부과1과)

- 95년도 이전 :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 불가
- 96년도분~98년도 : 부과 누락
- 99년도분 : ₩ 43,000원(미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00레미콘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장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등록말소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임

□ 진행 및 사후관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의 규정(등록의말소)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 취소는 불가하며
- 등록말소는 장비의 소재를 최대한 추적 파악 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말소등록 조치할 것을 권고

42. 무허가건물의 철거기한 연장 조치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42)

- 90년에 건축물을 매입(무허가 포함)하여 사용(전세)하고 있었으나 소사구청 건축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지시(99. 10. 31일까지)가 있었음
- 무허가건축물의 전세금 2,600백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 반환해 줄 형편이 못 되어 철거기한 연장 요청

□ 조사 및 조치내용

- 무허가건축물 현황
 - 발생일시 : 99. 2. 19(무허가 발생시기 86년도로 추정)
 - 무허가 면적(구조) : 84㎡(벽돌·슬래브(조적조))
- 무허가건축물 철거 지시 경위
 - 본 무허가건축물은 00아파트 경계에 설치된 옹벽위(높이 약 2.5m)에 인접 축조되어 있고 준공 건축물에 붙어서 지어져 있어서 접합부분에 약 1~2cm 정도 이격 현상이 발생되어 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철거 요망
 - 소사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무허가건축물 철거 지시 : 99. 2. 19
- 무허가건축물 거주자 의견 수렴
 - 무허가건축물이 위험함을 인정(전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감)
- 건축법 적용 조항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부과)

□ 진행 및 사후관리

- 상기 무허가건축물은 86년도경에 발생한 건축물로서 기초가 약하고 준공된 건축물과 무허가건축

물 접합부분간 이완현상이 발생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 옹벽 아래로 통행하는 00아파트 주민 및 차량들이 옹벽 붕괴시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철거가 시급하나
- 본건은 갑자기 건축주에게 제기된 사안으로서 건축주에게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계도시간이 필요하고 건축주가 전세금을 반환해 줄 형편이 못 되는 실정으로 구청장은 건축물 안전여부를 최대한 정확히 진단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연장하도록 권고

43.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3)

- 역곡1동 안동네 수주로 개통에 따라 주민들의 농기계 이동시 중앙선 미절취로 중앙선 무단 침범이 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선 절취 및 점멸등 설치 요청
- 작동 방향에서 역곡동 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본 지역이 내리막 과속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 요청

□ 조사 및 조치내용

○ 도로 현황

- 도로폭 : 25M(서쪽자전거도로폭 6M, 동쪽보도 2M, 차도 17M)
- 차선수 : 3차선(민원발생구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전문가가 현장 실사 후 시공
- 교통안전시설물 시공 중에 주민들로부터 중앙선 절취를 요구한 민원이 발생되어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였으나 불합리하여 반영 안 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중앙선 절단 및 점멸 등 설치에 대한 의견

- 00가든에서 남쪽으로 약 70M 정도에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있으므로
- 00가든 앞 진입로에 중앙선 절단 및 점멸등 설치 요청건은 중앙선 절단 후 비보호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의 신호등쪽으로 약 70M 정도 우회하여 진·출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역주민의 안전에 관해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 조치할 것을 권고

44.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4)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00번지상에 주택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천시청에 토지형질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3호 규정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으로 해결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민원인의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2항(허가기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위허가 등)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 11. 11일자 부천시 고시 제93-43호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임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부천시토지형질변경허가사무처리규정 제4조(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민원인의 토지가 「공원용지에 인접한 지역과 주변이 미개발지역으로 녹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기존시가지(주거지)와 현지형상의 표고차가 2m 이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 현지확인 조사결과
 - ① 민원인의 토지는 남쪽방향으로 토지 일면은 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나 주변에 단독주택(건평 50평, 대지 249평) 1동이 있고 서북방향으로 롯데아파트(고층)가 있으므로 제4조1항3호 규정을 적용함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② 기존 시가지(주거지역)와 현지 토지형상의 표고차가 2m 이상으로 적용한 사항은 인접된 주거지와의 표고차를 현지 측량하여 비교 검토하여 세 곳의 택지 중 표고차이가 가장 적은 곳이 2m 이하일 경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
 - ③ 다른 공공 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적절한 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 ④ 부천시토지형질변경허가사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의3호 규정은 “공원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지역과 주변이 미개발토지로서 녹지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 “공원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토지”라는 부분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유재산이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가지역에 인접하였다하여 또 한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4호에는 “대지 조성 후 인접 토지와의 표고차가

2미터 이하인 토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동 3호 "기존 시가지(주거지역)와 현 지형상의 표고차가 2미터 이하인 토지"로 된 것과 중복이 되기도 하면서, "대지조성 후 인접토지와 표고차가 2미터 이하인 토지"라는 것은 표고차가 2미터가 넘는 토지라도 대지를 조성할 때 땅을 더 많이 깎아내면 표고차를 2미터 이하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 3호 규정을 무시하는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 적용 과정에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상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정은 폐지하고,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그 근거규정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목적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45. 농지전용 협의 반려, 재결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5)

- 범박동 00번지상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오리를 키우고자 소사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농지전용협의 불허로 인해 반려된 사항으로 재결 요청

□ 조사 및 조치내용

- 농지전용 신청 현황
 -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11-1번지
 - 신청면적 : 330.6㎡(전)
 - 전용목적 : 오리사육을 위한 축사부지 조성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접 수 : 소사구청(농지전용협의 : 농산지원사업소)
 - 접수일자 : 99. 9. 8
 - 건축허가 반려 : 99. 9. 16
- 건축허가서 반려
 - 상기 농지는 우량농지인 전으로 보존가치가 있음
 - 축산분뇨 및 악취발생 예상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 환경 피해 우려로 농지전용 부적합
- ※ 적용법규
 - : 농지법 제36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2항,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지침 제6조

□ 진행 및 사후관리

- 농지전용 신청지를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였으나 범박동 00번지는 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량농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에 따른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될 시는 민원인에게 피해방지계획서를 보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에게 피해방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한 사실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불허 처리함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

46. 자동차등록 원인 무효 신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6)

- 중동 주공아파트 00동에 거주하는 오00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경기1로 0000차량이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말소등록 및 원인 무효임을 주장함

□ 조사 및 조치내용

- 등록일시 : 90. 2. 7(당시 28세)
-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명의가 당초 김00 → 오00로 수정 등록되어 있으며
- 90년 2월 등록 당시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오00로 인감증명 발급사실이 없으며
- 오00로 가입된 보험 등 등록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확인하기가 불가하였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자동차등록 부서에 위 사실은 사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므로 등록원인 무효임을 통보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의 규정에 정한 바대로 직권말소 조치할 것을 권고하여
- 부과취소 및 직권말소 조치함

47.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부과취소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47)

- 91. 2. 7일자로 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화물자동차(경기7러0000) 소유자가 되어 91~99. 27일까지의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형편으로 본인도 모르는 자동차 소유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자동차 관련 모든 세금 부과 취소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이전차량 소유자 조사사항
 - 성 명 : 0 0 0
 - 차량매매처 : 복사골 중고 자동차폐업(현재 00자동차) → 입증자료는 없음
 - 차량등록을 대리한 직원 : 찾을 수 없음
- 민원인이 차량을 소유하게 된 경위
 - 명의이전등록 일시 : 91. 2. 7

- 민원인의 인감증명발급 일자 : 91. 1. 10
- 민원인의 인감증명발급 신청자 : 대리인발급(민원인의 오빠)
- 민원인의 인감증명용도 : 차량매매용(오빠가 소지하다가 분실하였다고 함)
- 민원인의 운전면허증 취득사실여부: 취득사실 없음(인천남부서 확인)
- 민원인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된 일시 : 98년도 자동차세고지서가 전달된 후

○ 차량등록 관청에 제출된 서류 확인

: 문서보존기간 3년이나 5년 후인 96년도에 폐기처분하여 확인 불가

○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조사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본건 조사 진행 중 본인이 관련세액 전체를 납부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함으로써 내부종결

48. 종합상가 건물의 단전은 공권력의 남용

□ 고충의 내용(고충 99-48)

○ 심곡2동 00번지 소재 00소평 건물 내에 입주한 상가 중 부도 등의 이유로 전기료를 체납한 상가가 있다고 하여

○ 상가 전체의 전력을 단전 조치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므로

○ 체납 전기료의 분납 또는 전기 계속 공급조치 요망

□ 조사내용 및 조치내용

○ 전기료 체납액 : 1,000만원

○ 체납상가 : 3개 상가(부도 등 영업부실)

○ 입주상가 : 100여 개소로 이 중 부도 등의 사유로 3개 상가가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체납하게 되어 한전에서는 강제로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 상가연합회 측은 3개 사를 이유로 강제 단전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체납분에 대한 분납 등을 통해 강제 단전은 철회할 것을 요청

□ 진행 및 사후관리

○ 관계기관에 체납분의 분납 등을 통해 시민의 영업 및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권고하여

○ 이를 받아들여 현재 영업 중임

49. 자동차세 감액 조치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49)

○ 99. 4. 1일 교통사고로 승용차 경기37다 0000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어 폐차를 하기 위하여 김포에 소재한 00기업(폐차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였으나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이 체

납되어 압류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폐차할 수 없다 하여 아직까지 폐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자동차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 요망

□ 조사 및 조치내용

- 교통사고일시 : 99. 4. 1 10:30
- 사고차량 폐차장 입고일시 : 99. 4. 6
- 사고차량 폐차장 입고 장소 :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000-00 00기업(폐차사업소)
- 사고차량 압축일시 : 99. 5. 10
- 자동차 압류 사항 : 5건 압류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1조제1항4호(폐차요청 등)
 - : 저당권,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 부과

□ 진행 및 사후관리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1조제1항4호에 의거 폐차는 할 수 없으나 자동차를 압축하여 근거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99년도 상반기분(99. 1. 1~99. 6. 30) 중 압축시점 99. 5. 10~99. 6. 30일까지(20일 간)의 자동차세는 감액조치 권고하여
- 감액 및 말소조치 완료함

50.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전 신축 가능토록 조치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50)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이전 요구로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이축을 할 계획이나
- 이축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 후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함

□ 조사 및 조치내용

가. 이축을 하기 위한 조건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중·개축이 불가능한 주택 → 이축 가능

나. 이축가능장소 : 임야 외의 토지 및 우량농지를 제외한 지역에 이축 가능

※ 우량농지 : 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지역, 경지정리된 지역, 수리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에서의 집단화된 농지

다. 토지형질변경 면적 : 부속건축물을 지상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하 가

능

라. 관련법규

1)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교부훈령)

○ 제7조제3항 : 타인 대지위의 주택을 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이축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

○ 제28조제2항(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건축허가 절차) :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형질변경사함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오정구 건축과에서 상기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반려(건축허가서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첨부해야만 허가 가능)

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개정령)

○ 제12조제3항2호(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하는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 토지거래 허가 부서 → 농지전용허가(협의)서 요구

□ 진행 및 사후관리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3항제2호 규정 등으로 농지를 건축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강구토록 안내하였음

• 대안

1. 인근의 잡종지를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할 수 있고
2. 농지(농업용)를 구입 건축하고자 할 시에는 농지를 매입하고 난 후 1년 이상 성실경작을 하면 농지전용 협의가 가능하므로 건축할 수 있음

51.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51)

○ 85년부터 94년까지 부천시 소유의 00동 00번지를 대부 계약하여 임대료를 94년도 정기분까지 완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사실확인요청을 부천시에 하였으나 사실확인 발급 대상이 아니라 하여 실농에 따른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 조사 및 조치내용

○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 : 1985. 11. 1~1990. 10. 31

-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 용도 : 농경용
-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면적 : 1,805㎡
- 국유재산 대부료 수납부 확인
 - 89년도분 : 미납부
 - 90년도분 : 납부
 - 91년도분 : 납부
 - 92년도분 : 미납부
 - 93년도분 : 납부
 - 94년도분 : 납부
- 국유재산 체납자인 상기 고충인 000에 대해 부천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납부의뢰 공문 발송 : 97. 3. 13일 시행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체납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여 부천시에 납부 : 97. 3. 29

□ 진행 및 사후관리

- 90. 10. 31일 이후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의 착오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작성이 누락되었으나 대부료 고지서를 발부한 점 및 대부료를 납부한 것은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 국유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납부의뢰한 사실은 국유재산대부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공부를 확인 후 사실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토록 권고하여 발급 조치함

5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 지급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52)

- 부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제3지구) 시행 전 00동 00번지(18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청산금 교부요청을 하였으나 부천시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 조사 및 조치내용

- 부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추진경위
 - 69. 3. 7 : 부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 승인요청
 - 69. 4. 7 : 사업시행 명령
 - 69. 10. 8 :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
 - 69. 12. 30 : 소사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70. 3. 2 : 환지에정지 계획 공고
- 70. 4. 9 :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에정지 계획인가
- 70. 4. 14 :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 76. 8. 25 : 확정 측량 결과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
- 76. 12. 31 : 환지계획 변경인가
- 77. 11. 1 : 환지처분 공고

○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민원인 토지 현황 조사

- 심곡동 00번지
 - 공부상 지목 : 전
 - 사실 이용상 지목 : 도로
 - 공부상 지적 : 18평
 -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고충신청인

•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유

민원인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의 도로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의 후단 적용 청산금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민원인의 토지는 사실 이용상 지목이 도로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의2항의 후단 사도 또는 기타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환지지정 및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고 부천시로 무상 귀속된 토지이며
- 서울고등법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이(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구 구획정리사업법(1966. 8. 3법률 제1822호) 제53조제2항 후단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 15638 판결)라고 판결된 사항으로서 고충인을 이해 설득함

53.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할인제 시행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53)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야간주차나 장기주차에 따른 할인제도 도입 시행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가. 타시와의 주차요금 비교

(부천시)

구분	급지	1회주차		1일주차권	월정기	
		최초30분	10분마다		주간	야간
노상주차장	1급지	400	200	6,000	60,000	무료
	2급지	300	100	4,000	40,000	무료
	3급지	300	100	4,000	40,000	무료
노외주차장	1급지	400	200	6,000	60,000	40,000
	2급지	300	100	4,000	40,000	30,000
	3급지	300	100	4,000	40,000	30,000

(안양시)

구분	급지	30분마다	일일주차권	월정기권
노상주차장	1급지	500	없음	없음
	2급지	400	4,800	없음
	3급지	300	3,000	없음
노외주차장	1급지	500	6,000	60,000
	2급지	400	4,000	40,000
부설주차장		500	6,000	60,000

(인천광역시)

구분	최초30분	초과15분마다	전일주차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	10,000	100,000	75,000
2급지	600	300	6,000	60,000	45,000
3급지	400	200	4,000	40,000	30,000
4급지	300	150	3,000	30,000	22,500

□ 진행 및 사후관리

○ 급지구분(부천시)

-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3급지 이외의 지역, 중로 15미터 이상의 노상주차장
-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노외주차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차장

나. 부천시의 요금 감면 내용

○ 감면내용

감 면 율	감 면 내 용	비 고
20%	10부제, 카풀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형차(800cc), 노외주차장 주변건물	
100%	모범 납세자	

○ 환승주차장

-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1회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1일 주차요금은 3,000원,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으로 하며, 이용자가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한다.(주간 : 08:00~20:00, 야간 : 20:00~ 익일 08:00까지)

다. 1일(24시간) 기준 노외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요금 비교

○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구분	1회 주차시	1일 주차권	월정기권		비고
			주간	야간	
부천시	14,400	4,000	40,000	30,000	
안양시	19,200	4,000	40,000		주·야간 구분없음
인천시	28,800	6,000	65,000	45,000	

라. 민영주차장의 경우

- 기본시간 30분마다 : 1,000원
- 월정기권 : 평균 70,000원

□ 진행 및 사후관리

-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타시·도에 비해 저렴하며 민영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보다 주차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천시 공영주차장 중 환승주차장(역 주변)의 경우 환

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1회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1일 주차요금은 3,000원, 월정기권으로 할 시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으로 하며, 이용자가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민원인 이해 설득

54.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조치 요망

□ 고충의 내용(고충 99-54)

-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00번지상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면서 매립 전에 있었던 배수로를 매립 후에 변경하여 집중호우시 제방범람으로 농작물(미나리) 피해와 농지가 유실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및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옥길동 000-0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 허가일자 : 94. 12. 6(3건 3필지 동일)
- 허가면적 : 총 9,037㎡
- 착공일자 : 95. 1. 3(00번지는 착공계 제출 안 됨. 허가조건 제1번 위반)
- 준공일자 : 준공처리 안 됨(허가조건 제1번 위반)
- 지목변경 : 답 → 전
- 성토높이 : 90cm(농경지 지면은 평면)
- 배수계획 : 세부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종단면도상의 농경지 지면이 평면으로 토지의 양쪽면으로 배수처리

○ 현재 토지형질변경 진행사항

- 토지형질변경 공정 : 100% (완료)
- 사용용도 : 시설재배(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중)
- 성토높이 : 이미 성토 완료되어 확인 곤란
- 배수처리
 - 한쪽 방향은 흙관으로 설치(집수정을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지표수가 흙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토사측구쪽으로만 집중됨)
 - 다른 한쪽 방향은 토사측구로 자연 배수되나 집중호우시 지표수의 집중으로 민원인의 농경지 뚝방 범람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발생

○ 민원인의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내용

- 뚝방 유실 : 약 5m(응급복구됨)
- 농작물 피해 : 미나리 수확량 감소 및 미나리 뿌리가 약 50% 정도 썩음

○ 민원인의 주장 피해액 : 약 1천만원

○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신고(소사구청)를 하였으나 보상받지 못함

※ 도로포장(콘크리트) 상태가 불량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약 5년 전)로 제방이 낮아져 금
년도 집중호우시 제방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 발생됨

□ 진행 및 사후관리

○ 옥길동 000-0번지의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
으로 조속히 허가조건을 이행 인근 토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민원인에게 피
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허가부서에 권고 조치하였으며

○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은 소송을 수행토록 안내

55. 수도계량기를 유치원부지 내로 이전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55)

○ 상동 00번지 00유치원의 수도계량기가 유치원으로부터 200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수도 누
수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 관리가 용이한 유치원 내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조사내용 및 조치내용

○ 시설 설치연도 : 92년

○ 설치 및 시공사 : 00건설

○ 94. 5월 사용검사 완료 후 98년 6월 9일 하자보수의무 종결

○ 유치원 및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 및 하자보수가 완료시점이므로 동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는 소유자 책임이라는 시공사측의 주장과 상가(유치원)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진행 및 사후관리

○ 관계 시공사에 협조처리할 것을 권고 중에 있음

56. 농지전용 협의 반려 건의 재결 요청

□ 고충의 내용(고충 99-56)

○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다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 요구

□ 조사 및 조치내용

○ 현 황

○ 위 치 : 부천시 도당동 000-0번지

○ 지 목 : 전

○ 소 유 자 : 0 0 0

○ 용도지역 변경

• 1968. 1. 29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1976. 3. 27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1986. 11. 7 : 상업지역 → 녹지지역

• 1994. 10. 6 : 녹지지역 → 주거지역(조건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 경기도승인 증축 가능)

• 1995. 3. 10 : 전용예정 농지현황 통보[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와 관련 자연녹지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현황통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

○ 건축(신축)일시 : 1983. 2. 7[지목(전)변경 없이 건축됨]

○ 증축일시 : 96. 11. 15(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증축이 가능)

※ 본 토지가 건축대지면적에 포함된 사유 : 기존건물에 2, 3층 증축시 정북방향의 일조권 침해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일조권 저축문제 해결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 96. 12. 17

• 농지조성비 : 972,000원

• 농지전용부담금 : 108,000,000원

○ 소송제기(피고:농어촌진흥공사)

• 서울고등법원판결 : 98. 11. 5(기각)

• 판결요지

1.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임

2. 농지로서의 성질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불과하므로 농지로 판단

3. 녹지지역 →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증축이 가능 → 건축대상지로 포함됨

○ 대법원상고신청 : 98. 11

○ 지목변경신청(원미구청에서 전화연락) : 99. 7. 28(대지로 변경됨)

○ 상고신청 취하(지목변경이 완료되어 해결이 된 것으로 오인) : 99. 11. 19

○ 증축신고건 준공 : 준공을 못 함(농지조성비 및 부담금 납부 후 가능)

□ 진행 및 사후관리

○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원인무효 등의 법적 대응 강구토록 안내

V.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읍부즈만 직무의 한계성

【문 제 점】

○ 부천시읍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읍부즈만의 직무는

- 1. 시민이 시 등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조사
- 3.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 권고
- 4.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5. 권고·의견표명 등의 내용 공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읍부즈만실에 제출한 민원에 한하여 조사 처리하는 실정이며

○ 행정심판청구나 각과에 제출한 진정서 등의 고충민원은 시민의 편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읍부즈만이 조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 책】

- 부천시 읍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에 제출한 모든 고충민원까지 읍부즈만이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읍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 행정심판청구 등의 민원은 답변이나 서면준비를 읍부즈만과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제도개선
- 감사실이나 각 부서에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사항을 정기적으로 읍부즈만이 확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효 과】

- 읍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방지

2. 읍부즈만실 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 제 점】

- 시의 감사, 예산, 세무,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정보비 또는 민원창구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평정에도 가점을 적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가점을 적용하는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고충민원 접수부터 조사활동, 처리까지 하고 있는 읍부즈만실의 직원에 대하여 아무런 특전이 없어 사기저하 우려되며
- 근무평정도 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 불이익 우려

【대 책】

- 읍부즈만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수당 지급 방안 및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기진작 방안강구 조치

VI. 부 록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1997. 1. 17]
조례 제1483호]

- 개정 1997. 4. 21 조례 제1486호
- 1998. 4. 1 조례 제1565호
-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 1999. 7. 29 조례 제16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3.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이하 “시정 등의 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표

제3조(사무관할제외)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옴부즈만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2장 책 무

제4조(시민옴부즈만의 책무) ①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읍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의 기관책무) ①시는 시민읍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읍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적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읍부즈만의 조직 등

제7조(시민읍부즈만의 조직 등) ①시민읍부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 시민읍부즈만으로 한다.

②시민읍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③시민읍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④시민읍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시민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읍부즈만이 정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시민읍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해촉) 시장은 시민읍부즈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겸직 등의 금지) ①시민읍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시민읍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장 고충의 처리 등

제11조(고충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민읍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의 신청절차) ①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읍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기타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

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고충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의 조사 등) ①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고충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시민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에의 통보) ①시민옴부즈만은 신청에 관련되는 고충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채택된 사안(이하 “고충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신청인에의 통지) 시민옴부즈만은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민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시민옴부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민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표) ①시민옴부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시민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부시장직속으로 하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시민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1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1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9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조례제정공포 97. 1. 17 (부천시조례 제1484호)

조례개정 98. 10. 10 (부천시조례 제1603호)

조례개정 99. 7. 29 (부천시조례 제16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장 보 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산정기준"이라 함은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천단위 숫자까지로 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기준) ①시민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으로 한다.

②보수의 금액은 보수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해촉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촉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지급기관) 보수는 부천시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위촉일자 또는 해촉일자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2년 이상 연임한 시민옴부즈만이 해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달 1일자로 해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해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해촉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해촉된 시민옴부즈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해촉 이후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해촉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시민옴부즈만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비용변상) ①시민읍부즈만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여비조례를, 국외 출장시에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부 무

제12조(책임완수) 시민읍부즈만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기강 확립) 시민읍부즈만은 법령 및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공직내부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친절·공정) ①시민읍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민읍부즈만은 시민행정관으로서 시민의 신임을 얻도록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품위유지) ①시민읍부즈만은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읍부즈만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①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하는 시민읍부즈만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민읍부즈만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그외의 방법으로 읍부즈만업무 담당주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시민읍부즈만의 근무일은 주 3일로 한다.

②시민읍부즈만의 근무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대표시민읍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③시민읍부즈만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는 지정되어 있는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2.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제18조(공무재해보상) 시민읍부즈만의 공무재해보상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휴가) ①시민읍부즈만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11일로 한다.

③시민읍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시민읍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2. 시민옴부즈만이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공무외의 해외여행) 시민옴부즈만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휴가의 절차) ① 시민옴부즈만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휴가신청시의 근무상황부 서식은 부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5조(특별휴가) 시민옴부즈만은 본인의 결혼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출장·외출) 시민옴부즈만이 관외출장·관내출장 및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민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는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시의 확인자는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입회자는 시장이 된다.

제28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시민옴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옴부즈만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직무감독) 시민옴부즈만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를 지휘 감독한다.

제30조(직무위임) 대표시민옴부즈만이 휴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위촉일사순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9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7. 4. 1]
조례 제10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시민옴부즈만)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이 1인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시민옴부즈만이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경력, 시민옴부즈만의 근무경력,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시민옴부즈만을 지명할 경우에는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③대표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시민옴부즈만의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통할하며 시민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기타 시민옴부즈만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은 다른 시민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시민옴부즈만의 자격 등) ①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부천시의회 의원이나 부천시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봉사단체에서의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대표시민옴부즈만은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의 임기와 같다.

제5조(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①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체 또는 단체"라 함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시장이 한다.

제6조(고충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청은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민읍부즈만은 고충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고충사항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매우 비밀스럽게 행하여져서 1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기타 대표시민읍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인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고충조사제의 통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충조사제의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고충조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지연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부서에 고충조사통보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의 휴대 등) 시민읍부즈만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청인에의 통보는 고충조사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고충처리(권고·의견표명)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시정등 조치의 통보)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의 통보는 권고(의견표명)조치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로부터의 통보에 대한 고충신청인에의 통지는 고충조사결과 조치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의한다.

제15조(전문조사원 임명 등) ①조례 제20조제2항의 전문조사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②전문조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1. 연구·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연구·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전문조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조사원의 위·해촉,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및 부천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사무기구는 부서장 직속으로 하되 행정부와 독립된 자격을 인정한다.
2.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3. 사무기구직원은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 ①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 인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부천시공인조례 및 부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통보)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에의 통보 및 의회보고는 매년 12월말일까지의 신청의 건수, 고충조사건수, 시민옴부즈만의 발의에 기초한 조사건수,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 등 조치, 기타사항을 집계하여 익년도 2월말일까지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4. 1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0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